

## 교원 재임용 및 승진임용 평정관리 세칙

(제정 1992. 3.23.)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장제2절, 제3절에 따라 본교 교원의 재임용, 승진임용에 필요한 업적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비정년계열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비정년계열교원 임용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6.8.16.>

**제2조(업적물의 범위)** ①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

② 논문은 해당 학부(과)의 전공분야에 관한 것으로 형식과 내용이 논문으로써 체계를 갖춘 것 이어야 하며, 최소한 200자 원고지 100매 정도이어야 한다. 다만, 이공계는 예외로 한다.

**제3조(업적물의 인정)**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

**제4조(업적물의 심사)** ①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에 필요한 업적충족량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른다. 다만, 승진 임용순위는 업적충족량에 따라 서열을 정하며, 교원인사규정 제6조의 직명별 정원조정에 따라 임용한다.

② 승진임용 심사평정시 업적충족량 합계점수가 같을 경우 연구업적 충족량, 전직급 승진임용 일자, 부임 일자,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임용서열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업적 인정기간 및 충족량)** ①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재임용 및 승진임용 기간 내에 충족한 업적으로 한다.

② 승진임용에서 탈락한 교원이 차기 승진대상이 될 경우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차년도 업적을 상향 충족하여야 한다.

**제6조(재임용)**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본 세칙 제4조, 제5조에 따른다. 다만, 정년보장 대상교원에 대한 평정은 정년보장교원 임용세칙에 따른다.

**제7조(승진임용)**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본 세칙 제4조, 제5조에 따른다. 다만, 정년보장 대상교원에 대한 평정은 정년보장교원 임용세칙에 따른다.

**제8조(재임용 탈락자 통지 절차)**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 총장은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총장은 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학인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재임용 탈락자의 소명 방법과 절차)** ①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은 교원이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갖추어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할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교무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임용 탈락자의 소명이 있을 경우 총장은 재임용 탈락 소명 결과에 따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1개월 이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절차)** 재임용 및 승진임용에 관한 업무절차는 교무처에서 주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2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7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